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정 공고

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년 월 일 공고한 년도 제 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

년 월 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※ 수정 내용

공고 전 취득한 국외

O 국외에서 취득한 성적 인정범위 변경 에 따라 년도 시행계획 성적 인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고 내용 수정

당초 공고 내용(2020. 2. 21.)

수정 공고 내용(2020. 3. 6.)

8. 공인어학성적

가 제 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가 당초 공고문과 동일 성적으로 대체

O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국내 어학시험 기관에서 국외 성적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인정하나 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

8. 공인어학성적

- O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국내 어학시험 기관에서 국외 성적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인정하나 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

1. 2020 · 2021년 변경사항 안내

가 년도 변경사항

O 원서접수기간이 일로 변경

변경 전	변경 후
■ 원서접수기간: 10일	■ 원서접수기간: 5일

나 년도 변경사항

- O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 통신 기기 관리 운영 변경
 - 1.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(퇴실) 및 무효 처리
 - 2. 전자·통신기기(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)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
 - 3. 소지품 정리시간(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) 이후 시험 중 전자· 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·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(퇴실) 및 무효(0점) 처리
 - 4.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. 1.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
 - ※ <u>2021. 1. 1. 부터</u> 공단에서 실시하는 <u>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</u>에서 상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(퇴실) 및 무효(0점)처리 됨

다 제 차 시험 채점평 안내서비스 폐지

2. 최소합격인원

O 제 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명

3.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

구 분	원서접수기간 (2·3차 시험 동시접수)	시험장소	시행지역	시험일자	합격자발표
제1차 시 험	'20. 4. 13.(월) 09:00 ~ 4. 17.(금) 18:00	원서접수 시		′20. 5. 23.(토)	'20. 6. 24.(수)
제2차 시 험	'20. 7. 20.(월) 09:00 ~	수험자 직접선택	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	'20. 8. 15.(토) ~ 8. 16.(일)	'20. 11. 4.(수)
제3차 시 험	7. 24.(금) 18:00	'20. 11. 10.(화) 공고 예정	서울	'20. 11. 20.(금)	'20. 12. 2.(个)

제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	'20. 4. 9.(목) 09:00 ~ 4. 17.(금) 17:00
제1차 시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	'20. 7. 16.(목) 09:00 ~ 7. 24.(금) 17:00

4.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

가 시험과목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 조

구 분	시	험과목[배점]	출 제 범 위	
	필수 과목 (5)	① 노동법(1) [100점]	「근로기준법」,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「산업안전보건법」,「직업안정법」,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최저임금법」,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,「임금 채권보장법」,「근로복지기본법」,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	
제1차 시험		과목	② 노동법(2) [100점]	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,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」, 「노동위원회법」,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(6과목)		③ 민법[100점]	총칙편, 채권편	
			④ 사회보험법 [100점]	「사회보장기본법」,「고용보험법」,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,「국민건강보험법」,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		55 영어		
	선택 과목 (1)	6 경제학원론· 경영학개론 중 1과목[100점]		

구 분	시	험과목[배점]	출 제 범 위
	필수 과목	① 노동법 [150점]	「근로기준법」,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「고용보험법」,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,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, 「노동위원회법」,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,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제2차 시험	(3)	② 인사노무관리론 [100점]	
(4과목)		③ 행정쟁송법 [100점]	「행정심판법」및「행정소송법」과「민사소송법」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
	선택 과목 (1)	④ 경영조직론, 노동경제학, 민사소송법 중 1과목 [100점]	
제3차 시험		면 접 시 험	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

나 과목별 시험시간

구 분	시행일자	교시	시 험 과 목	입실시간	시 험 시 간	문항수	
제1차 시 험	5. 23.(토)	-	1)노동법(1)2)노동법(2)3)민 법4)사회보험법5)경제학원론,경영학개론 중 1과목	09:00	09:30 ~ 11:35 (125분)	과목별 25문항	
		1 		09:00	09:30 ~ 10:45 (75분)	4문항	
	8. 15.(토) 제2차 시 험 8. 16.(일)	2	П +0 в	11:05	11:15 ~ 12:30 (75분)	TE 6	
		3	② 인사노무관리론	13:30	13:50 ~ 15:30 (100분)		
		1	③ 행정쟁송법	09:00	09:30 ~ 11:10 (100분)	과목별 3문항	
		2	④ 경영조직론, 노동경제학, 민사소송법 중 1과목	11:30	11:40 ~ 13:20 (100분)	. J ⊏ O	
제3차 시 험	11. 20.(금)	-	□ 면접시험	-	1인당 10분내외	-	

5.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

가 응시자격 공인노무사법 제 조의

- 공인노무사법 제 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

나 결격사유 공인노무사법 제 조

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미성년자

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

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인노무사법 제 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

6. 합격자 결정

○ 제 차시험

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
- 각 과목 점 이상 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점 이상 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조정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
- 제 차 시험의 선택과목에 있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규칙 제 조의 제 항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점수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함

응시자의 점수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의 총합계 응사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의 거듭제곱근

O 제 차시험

과목당 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 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

-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
-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

• 각 과목 만점의 퍼센트 이상 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총점의 퍼센트 이상 이란 규칙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

• 성적의 세부산출방법

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아래 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에 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득점으로 함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의 산식에 따라 산출

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

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의 총합계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의 거듭제곱근

O 제 차시험

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 점 중 점 하 점로 구분하고 총 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 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

7. 시험의 일부면제

가 시험의 일부면제

- O 제 차시험 면제 년 제 회 제 차시험 합격자
- O 제 차 및 제 차시험 면제 년 제 회 제 차시험 합격자

나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

제 차시험 일부 과목면제

○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 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 및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 년 월 일 이전의 노동청 및 년 월 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

지방자치단체에서 「공인노무사법 시행령」 별표 의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 및 년월 일이전의 해운항만청 년월 일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년월 일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조합원 명이상인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 조 항 및 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상시근로자 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

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

제 차시험 전 과목과 제 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

-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제 차 시험과목 전부와 제 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 과목 면제
 - 고용노동부 년 월 일 이전의 노동청 및 년 월 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

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년 이상이고 그중 급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년 이상인 자

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년 이상이고 그중 급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년 이상인 자

다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적용 제외 공인노무사법 제 조의 제 항

-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 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및 제 차시험 전 과목과 제 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
 - ①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
 - ②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
•	시험의	일부(과	·목)면제	해당자	서류	제출	^	유의사항	
	< 전년	도 1차	또는 2 7	낚시험 합	격자의	원서	접수	안내 >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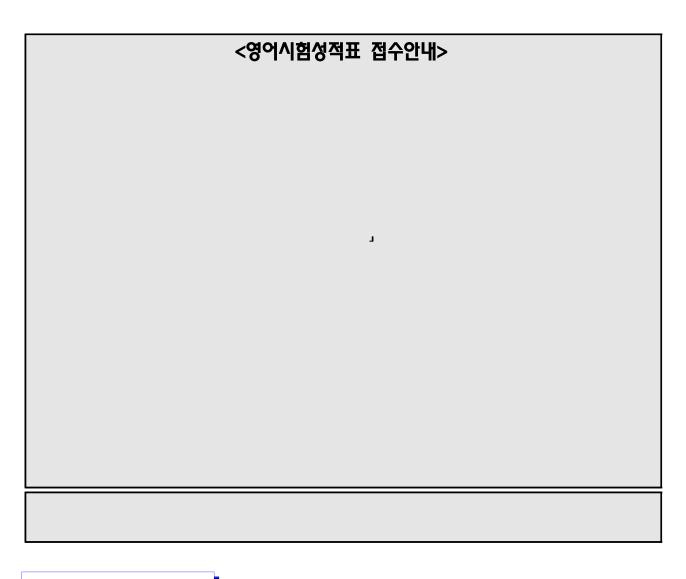
8. 공인어학성적

가 제 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

O 기준점수

-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**정규** 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특별 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
-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국내 어학시험 기관에서 국외 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인정하나 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

- 영어시험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
-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년도 월 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 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



9. 응시원서 접수

가 접수기간

○ 제 차시험

월 ~ 금 일간

O 제 차시험

월

일간

나 접수방법

O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

○ 원서접수 시 최근 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파일 로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(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)

다 수수료 납부

O 응시수수료

제 차시험 원

제 차시험 원

O 납부방법 전자결제

이용

라 수수료 환불

- O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
- O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
- O 시험시행일의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
- O 시험시행일의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분의

마 수험표 교부

- O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
- O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
-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 수험자 유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

바 원서접수 완료 후 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

O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

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자 증빙서류 제출

○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,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(장애정도 표기 필요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 제출 시, 상지장애로 구분

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(의료법 제3조의3) 의사진단서 제출(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

-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(소견서 포함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(임산부는 의원급・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,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)
- O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사항은 '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'참고

<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>

- 1.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
- 2.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(불편사항) 등
- 3.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- 4. 진단서 유효기간
- 단,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, 의사진단서에 따름

□ 응시편의 제공 신청 대상 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

참고: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(보건복지부령 제628호) 등에 따라 **장애 등급 대신, 장애 정도**로 표현함.

	장애유형	필기(답)형 시험	작업형 시험	제출서류
112F2F0II	중증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	■시험시간 1.7배 연장	■시험시간 1.5배 연장	①,②,③호 충 하나
시각장애	경증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	■시험시간 1.5배 연장	■시험시간 1.2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뇌병변장애	장애정도 구분 없음	■시험시간 1.5배 연장	■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
	상 지	① 중증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	■시험시간 1.5배 연장	■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치	② 경증 (장애의 정도가 삼하지 않은 장애인)	■시험시간 1.2배 연장	■시험시간 1.2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지체장애 하지	③ 하지 (정도 구분 없음, <u>척추장애</u> 포함)	■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	■시험시간 1.1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	
	④ 복합장애 [상지+하지]		■ 상지장애와 동일	■① 또는 ②의 정도에 부여한 시간 +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	①,②,③호 중 하나
청각장애	장애정도 구분 없음		■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		①,②,③호 중 하나
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		■장애의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			
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	(고 과무	애정도 구분 없음 바민성대장증후군 및 비성방광증후군, 신장, t, 장루·요루 장애 등)	■시험시간 일반응시7 - 시험 중 화장실 사	 자와 동일 용 허용	<u>4</u> 5

- * <u>척추장애</u>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 장애 진단서(장애정도 표기 필요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
- 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

※ 증빙서류

-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(명서) 또는 장애인 복지키드 시본 1부. 다만,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
-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및 상이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1부.
-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 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.
- ④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(소견서 포함)
 -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의료법 제3조제2항제 3회 목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(진단서 유효기간 기입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
- ※ (예시)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
-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(지체장애 상지장애① +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) ⇒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[<u>표준시간(60분) + {(60분)*0.3)=78분]</u> +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[(60분*0.1)=6분] = 84분

아 서류접수 및 심사

O 제출기간

제 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목 금 제 차 시험 전 과목 및 제 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목 금

- O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토 일 공휴일 제외
- O 제출기관 공단 개 소속기관 전문 상시 자격시험부

○ 제출서류① 시험 일부면제신청서② 경력증명서	부
○ 경력산정의 기준일 제	차시험 합격자 발표일
O 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한 유 경우에는 서류를 다시 제	구효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 제출한 세출할 필요가 없음
10.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기	배 및 의견제시 접수
가 기간 <u>토</u>	<u>금</u> 일간
나 공개 및 접수방법	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
11.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	발급
가 합격자 발표 ○ 제 차시험 발표내용 개인별 합 불	수 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개

- O 제 차시험발표내용 개인별 합 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개
- O 발표방법

공인노무사 홈페이지일간자동안내전화일간개인별 합 불 여부만 안내

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

- O 신청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
- O 신청방법 공인노무사 홈페이지

다 자격증 발급

○ **자격증 발급기관** 한국공인노무사회

12. 수험자 유의사항

제 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

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

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

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

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

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 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

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(답안지)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계속 답안카드(답안지)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시험은 <u>무효처리</u>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<u>정지</u>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

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해서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

전자계산기는 필요시 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 카드 포함 를 제거 삭제 리셋 초기화 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 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

시험시간 중에는 **통신기기** 및 **전자기기**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 말기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 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**금속 전파 탐지기**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**부정행위자로 처리**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

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

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

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인노무사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

제 차 시험 객관식 수험자 유의사항

답안카드에 기재된 <u>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</u>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

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 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

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번부터 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**동일한 번호에 마킹**하여야 합니다

답안카드 기재 마킹 시에는 **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**하여야 합니다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 답안카드 기재 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 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**수험자 책임**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

제 차 시험 주관식 수험자 유의사항

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<u>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</u>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

수험자 인적사항 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점 처리

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점 처리합니다

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 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 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

제 차 시험 면접 수험자 유의사항

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는 **화** 공인노무사시험 홈페이지 에 공고합니다

수험자는 일시·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.

소속회사 근무복, 군복, 교복 등 제복**(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)** 을 착용해서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

자격시험의 엄정.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,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(http://www.Q-Net.or.kr/site/nomu)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(☎1644-800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

г

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산업안정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직업안정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능장려법 근로복지기본법 삭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선원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장수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
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

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관계사건만 해당

「공무원연금법」같은 법 제 장 급여와 제 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같은 법 제 장 급여와 제 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 법령